# 2025년 AED 법령 강화!
# 무엇이 달라졌나?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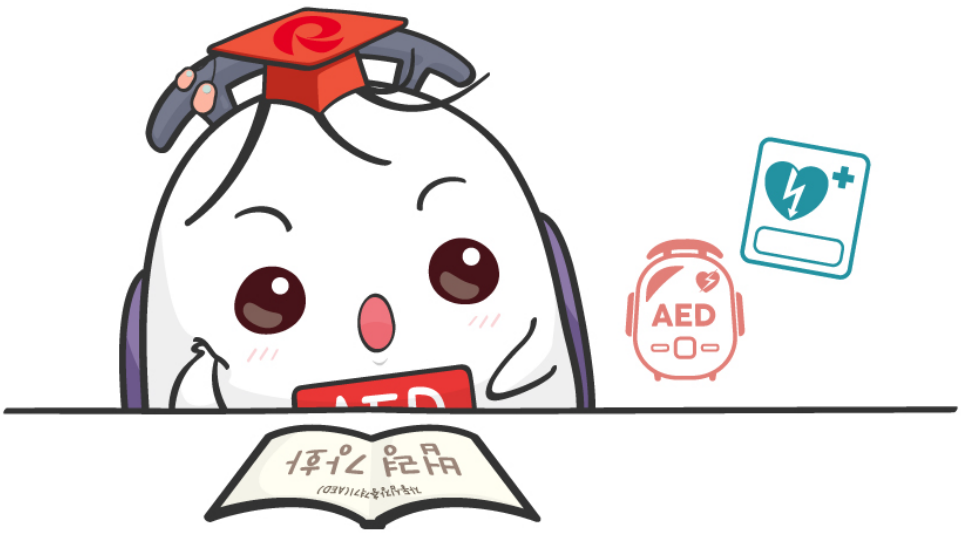


## 안내표지와 의무사항 총정리!!

AED 설치 신고 관리, 달라진 법령 한눈에 보기

RADIAN QBiO

# 1. 자동심장충격기 설치

-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시설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함 (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1항)

※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1

- 응급의료법 제62조 제1항 제3의 2호,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2

| 위반행위 | 근거 번조문 |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이상위반 |
| 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| 법 제62조 제1항제3호의2호 | 50 ↓ 100 | 75 ↓ 150 | 100 ↓ 200 |

[정비1] 응급의료법 제62조 제1항 제3의2호,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2

## 2.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

-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춘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 사실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(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2항)

  - 자동심장충격기의 양도·폐기·이전 시에도 신고 필요

  * 응급의료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13서식(응급장비 설치 신고서), 별지 제15호의16서식(응급장비 양도·폐기·이전 신고서)

※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2

- 응급의료법 제62조 제1항 제3의 4호,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 29조 및 별표2

| 위반행위 | 근거 번조문 |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이상위반 |
| 법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62조 제1항제3호의4호 | 20 → 50 | 40 → 100 | 60 → 150 |

[정비2] 응급의료법 제62조제1항제3의4호,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 29조 및 별표2

## 3. 관리자 지정 및 관리

-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다음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(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)

  - (매월 1회 이상의 점검) 자동심장충격기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, 그 결과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(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3항)

* 월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[지침·붙임의 작성 용지 참고] 보관, 『응급의료정보제공』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(http://portal.nemc.or.kr)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(app)을 활용하여 점검 결과 등록 → 향후 점검결과 등 보건 복지부 요청 시 제출근거로 활용

※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1

- 응급의료법 제62조 제1항 제3의 5호,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2

다음페이지에
과태료 위반에 대한 표를
확인해 주세요!

# 25’ AED 법령 강화

| 위반행위 | 근거 번조문 |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이상위반 |
| 법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62조 제1항제3호의5호 | 50 | 75 | 100 |

[신설1] 응급의료법 제62조제1항 제3의 5호,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 29조 및 별표2

RADIAN QBiO

# 4. 자동심장충격기 안내

-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(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4항)

※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2

- 응급의료법 제62조 제1항 제3의5호,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2

| 위반행위 | 근거 번조문 |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이상 위반 |
| 법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풀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62조 제1항제3호의4호 | 30 | 50 | 70 |

[신설2] 응급의료법 제62조 제1항 제3의5호,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2

RADIAN QBIO

자동심장충격기 설치부터 신고, 관리,
안내표지 부착까지 꼭 확인하고 준비해주세요.

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~

앞으로도 안전한 일상과 생명 보호를 위해
라디안큐바이오가 함께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!